

##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

2005. 9. 1 제정  
 2006. 9. 1 개정  
 2008. 3. 1 개정  
 2009. 9. 1 개정  
 2010. 3. 1 개정  
 2011.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7. 9. 1 전면개정  
 2020. 9. 1 개정  
 <대학원행정실>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종 교외 장학단체나 교외인사 등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 제 3 조 (지급자 및 수혜금액) ①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자수와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②제2조의 기관(단체, 개인 등)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지급자 및 금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제 4 조 (지급대상 등)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 5 조 (종류) ① 등록금 재원 장학금은 우수, 저소득층, 조교, 근로, 복지, 기타로 분류한다.  
 ② 위 ①항 외 기금장학금 등은 지급자의 선정 원칙에 따른다.
- 제 6 조 (우수장학금) ① 우수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외국인, 연구, 국제화 장학금으로 분류한다.  
 ② 성적우수자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안암연계장학금 : 본교 대학에서 안암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각 학위과정별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및 소정의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연중 2, 8월분 제외).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2. 졸업특대생장학금 : 본교 학부 졸업특대생이 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각 학위과정별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3.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 : 학사운영규정 제60조(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조기 졸업)에서 정한 조기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으로 진입한 경우 첫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4. 고려대학교대학원특별장학금 : 공모 절차를 거쳐 박사과정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일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이며, 학비 조달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매 학기 단과대학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정부초청외국인 장학금: 이 장학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에 정원외로 입학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글로벌리더장학금 : 본 대학원에 입학한 최우수 외국인 학생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및 소정의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2. 외국인인문사회계장학금 : 본 대학원(인문사회계)에 입학한 우수 외국인 학생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정규학기 수업료의 60%를 지급한다.
3. 외국인자연공학계장학금 : 본 대학원(자연공학계)에 입학한 우수 외국인 학생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정규학기 수업료의 65%를 지급한다.
4. 협정관련장학금 : 본교와 협정을 맺은 경우, 또는 관련 공문에 의거 선발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세종캠퍼스우수외국인대학원생장학금 : 본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캠퍼스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연구 및 국제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회지원장학금 : 공모 절차를 거쳐 본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연구자 모임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Junior Fellow Research Grant :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학원생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연구장려장학금 : 연구실적이 우수한 수료연구생에게는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
4. 국제화장학금 : 본 대학원 재학중 외국 대학 정규 학기 국제 복수 및 공동 학위과정 수학시 또는 중단기 해외프로그램 참여시 학과주임의 추천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저소득층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소망장학금 : 장애인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정규학기 수업료 50%(입학금 포함)를 지급한다.
2. 학자금융자지원장학금 :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정부지원학자금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융자신청 학기 대출금의 6개월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3. KU희망장학금 : 연구능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조교장학금)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조교로 임용된 학생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조교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근로장학금 : 교내 부서에서 업무 보조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학생자치활동장학금 : 학생자치활동 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하고 성실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 (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은 본교 학비보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기타장학금) 기타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학발전특별장학금 : 본교 및 대학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재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 1호 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허가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단, 제4조 제2항의 2단계BK21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7조 제4항 제1호의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제외), 정보통신대학, 간호대학 외국인장학금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과대학 제외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제18조의 소망장학금과 학자금융자지원장학금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②항 삭제, 제5조 9호 장학금 종류 변경, 제14조 장학금 변경, 제20조 문구 수정)
2. (경과조치) 단, 제14조(공무원학비감면) ①항의 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2009년도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두며, 2010년 전면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8호 폐지, 제5조 9호 명칭 변경, 제5조 10호 명칭 변경, 제7조 ④항 내용 추가, 제13조 폐지, 제14조 명칭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④항 1호, 2호 외국인 장학금 지급조건 변경)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15호, 제20조 신설, 제21조 조번호 변경)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14호, 15호, 제19조, 제20조

신설, 제4조, 제5조 7호, 제6조 2항, 제10조, 제12조 개정, 제5조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6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의 의과대학 제외는 2006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6조 제2항은 2006학년도 학부졸업자까지로 한다.
- ② 이 경과조치는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6조 제②항 제3호의 장학금은 2016학년도 후기 선발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선발자는 조기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첫학기 입학금을 지급한다.
- ② 제6조 ③항 관련 2017년 3월까지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재학생은 기존 지급 방식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급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신설, 제8조 개정)